

## 연결납세방식포기신고서

### 1. 연결모법인 기본사항

|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|--|
| ①법 인 명     |  |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|  |
| ③대 표 자 성 명 |  | ④자본금 또는 출자금액   |  |

### 2. 연결자법인 명세

| ⑤<br>번호 | ⑥법인명 | ⑦<br>사업자<br>등록번호 | ⑧사업연도 | ⑨자본금<br>또는<br>출자금액 | 연결모법인의 출자비율(%) |             | ⑫<br>간주사업연도<br>적용 여부 |   |
|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⑩직접출자<br>비율    | ⑪간접출자<br>비율 | 여                    | 부 |
|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| ..~..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여                    | 부 |
|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| ..~..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여                    | 부 |
|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| ..~..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여                    | 부 |
|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| ..~..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여                    | 부 |
|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| ..~..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여                    | 부 |
|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| ..~..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여                    | 부 |
|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| ..~..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여                    | 부 |
|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| ..~..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여                    | 부 |

### 3. 연결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받은 연결사업연도

### 4.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려는 사업연도 개시일

### 5. 연결납세방식 포기신고 사유
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120조의15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포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 고 인

연결모법인

(서명 또는 인)

지 방 국 세 청 장 귀하

## 작성 방법

※ 연결납세방식 포기 신고서는 연결모법인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을 경유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.

1. ⑧사업연도란: 연결자법인이 "간주사업연도"를 적용받는 경우 간주사업연도를 적용받기 전의 "본래사업연도"를 적고 "간주사업연도"를 적용받지 않는 연결자법인은 연결사업연도를 적습니다.
2. ⑨자본금 또는 출자금액란: 연결납세방식 적용 포기 신고일 현재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출자총액을 적고, 주식회사의 경우 의결권 없는 주식등을 포함한 자본금 총액(연결자법인의 연결지배 여부 판단 시 제외되는 우리사주 조합이 보유한 주식 등의 가액은 제외)을 적습니다.
3. ⑩직접출자비율란: 연결모법인이 해당 연결자법인에 직접 출자하고 있는 지분비율을 적습니다.
4. ⑪간접출자비율란: 연결모법인의 다른 연결자법인이 해당 연결자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지분 비율을 적습니다.
5. ⑫간주사업연도 적용 여부란: 「법인세법」 제76조의8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12제3항에 따라 본래의 사업연도가 법령 등에 규정되어 연결사업연도와 일치시킬 수 없는 연결자법인으로서 연결사업연도를 해당 연결자법인의 사업연도로 보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받는 법인은 "여"란에 "○"표시 하고, 그렇지 않은 법인은 "부"란에 "○"표시 합니다.
6. "3.연결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받은 사업연도"란: 연결납세방식 포기신고와 관련하여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받았던 최초의 연결사업연도를 적습니다.
7. "5.연결납세방식 포기신고 사유"란: 연결납세방식 적용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유를 간략하게 적습니다.
8.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받은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2024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연결자법인(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%를 보유한 법인) 외에 다른 내국법인을 연결지배(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90% 이상 100% 미만을 보유한 경우)하고 있는 연결모법인이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법률 제1919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을 부칙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.